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8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2
2.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개정안은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¹⁾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현행	개정안
<u>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u> 1. <u>국공립 연구기관</u> 2.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또는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정부출연연구기관</u> 3.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의 <u>적용을 받는 연구기관</u> 4. 「<u>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u>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u> 5. 「<u>고등교육법</u>」에 따른 <u>대학</u>	<u>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u>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 ·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2002년부터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시행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20.6.9. 제정, '21.1.1. 시행)되었는바,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²⁾이 마련됨에 따라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관리규정이 체계화되었음.

현행법 제9조제1항은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 외에도 지자체 연구원, 회사(영리법인) 등의 연구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기상산업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기관 관련 규정 비교]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 각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
1. 국공립 연구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이에 개정안은 공동연구사업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된 “연구개발기관”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자체 연구원과 「상법」상의 회사 등을 포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정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임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23조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u>경우</u>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 ----- ----- ----- <u>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 ----- ----- -.
1. <u>제8조</u> 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1. <u>제8조제1항</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기상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³⁾), 기상청장은 청문을 거쳐 기상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해 기상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기상사업자의 이중신고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문절차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